

보도시점 : 2024. 7. 16.(화) 11:00 이후(7. 16.(화) 석간) / 배포 : 2024. 7. 15.(월)

# 「시설물인전법」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

-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
-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「시설물안전법」)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□ 「시설물안전법」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「시설물안전법」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,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.
  -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·도지사 에게 등록해야 한다.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- (기술인력) 토목·건축·안전관리(건설안전 기술자격자)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, 중급기술인 이상 1명, 초급기술인 이상 2명
  - (장비) 균열폭측정기(7배율 이상이고, 라이트부착형일 것), 반발경도측정기 (교정장치를 포함할 것), 초음파측정기(초음파 전달시간을  $0.1\mu s$ 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) 등 3종
  - (자본금) 1억 원
- □ 한편,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「시설물안전법」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2~4회 실시하는 **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**의 **자격요건**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**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**된다.
  - \* 예) 초급(학사 + 기사자격 취득) → 중급(학사 + 기사자격 취득 + 경력 1.6년)

- 이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·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,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.
- □ 「시설물안전법」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문봉섭	(044-201-4598)
		담당자	사무관	구단일	(044-201-3587)
			주무관	김효진	(044-201-4596)







## 참고 1

## **법률(모법) 개정 내용** ('24.1.16 공포, '24.7.17 시행)

<ul> <li>✓신 설&gt;</li> <li>제28조의2(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등)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</li> <li>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,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,휴업·재개업·폐업신고,결격사유,명의대여의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제28조(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),제29조,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.이 경우 "안전진단전문기관"은 "안전점검전문기관"으로, "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"는 "안전점검 또는긴급안전점검"으로 본다.</li> </ul>	현 행	개정 법률
	<신 설>	등)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,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,휴업·재개업·폐업신고,결격사유,명의대여의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제28조(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),제29조,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.이 경우 "안전진단전문기관"은 "안전점검전문기관"으로, "안전점검 또

< 부 칙 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참고 2 「시설물안전법」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

#### ① 추진배경

- 기존에는 「시설물안전법」상 **안전진단전문기관**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대행 가능
- 건산법령 개정('20.12)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는 **종합·전문 건설사업자로** 업종전환 완료(~'23.12.)하였고, 유지관리업종은 폐지('24.1~)
- 이에, 유지관리업자의 기존업무(안전점검)를 대체하는 **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**을 위한 「시설물안전법」개정('24.1.16. 공포 → '24.7.17. 시행)
- 법 개정에 따라 **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** 및 **등록절차** 관련 사항을 **시행령·규칙**에 규정하고, 법 시행 전 제때 **개정 필요**

### 2 주요내용

-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신설(안 별표11 수정)
  -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**신설된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**의 기술 인력, 자본금액 등 **등록기준**을 시행령에 규정
    - **인력 수**는 기존 유지관리업(건설산업기본법 등록)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되,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고급기술자를 포함하도록 조정
    - \* (기존 유지관리업자) 초급 4명  $\rightarrow$  (안전점검전문기관) 고급 1명, 중급 1명, 초급 2명
    - 장비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스펙 기준을 충족하는 **필수장비 3종** 등록(시행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규정)
    - 자본금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과 같은 수준인 1억 원으로 설정
- ②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(안 별표5 수정)
  - 「시설물안전법」상 1~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2~4회 실시하는 **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**(초급 이상 → 중급 이상)